

[일련번호 : 7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관리카드 현행화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◀▶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◀▶과는 「물환경보전법」 및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·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2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*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※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변경신고 사항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| 5.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|
| 2. 시설의 소재지 | 6.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|
| 3.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| 7.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|
| 4. 연중 운영기간 | 8.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|

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[별표1]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

리기준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·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,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신고 및 관리카드의 작성·관리가 필요함에도, 썸앤문 분수광장, 해누리분수광장 시설에서 중요 변경신고 사항(시설 대표자)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, 관리카드의 수질검사, 용수관리, 소독, 여과기 가동, 저류조 및 시설 청소 등 항목의 현행화에 소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·감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